

case  
10

##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 요약

사례명	<b>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160 (2025.10.21.)
사실관계	중국 또는 독일에서 생산된 소재(폴리우레탄 필름, 초흡수성 섬유, 부직포, 폴리우레탄 폼, 실리콘 메쉬, 이형 필름)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라미네이팅, 절단,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베트남에서 중국산 또는 독일산 소재를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를 제작하고 각 층을 결합할 때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제조공정의 수행국인 베트남이 원산지임
근거법령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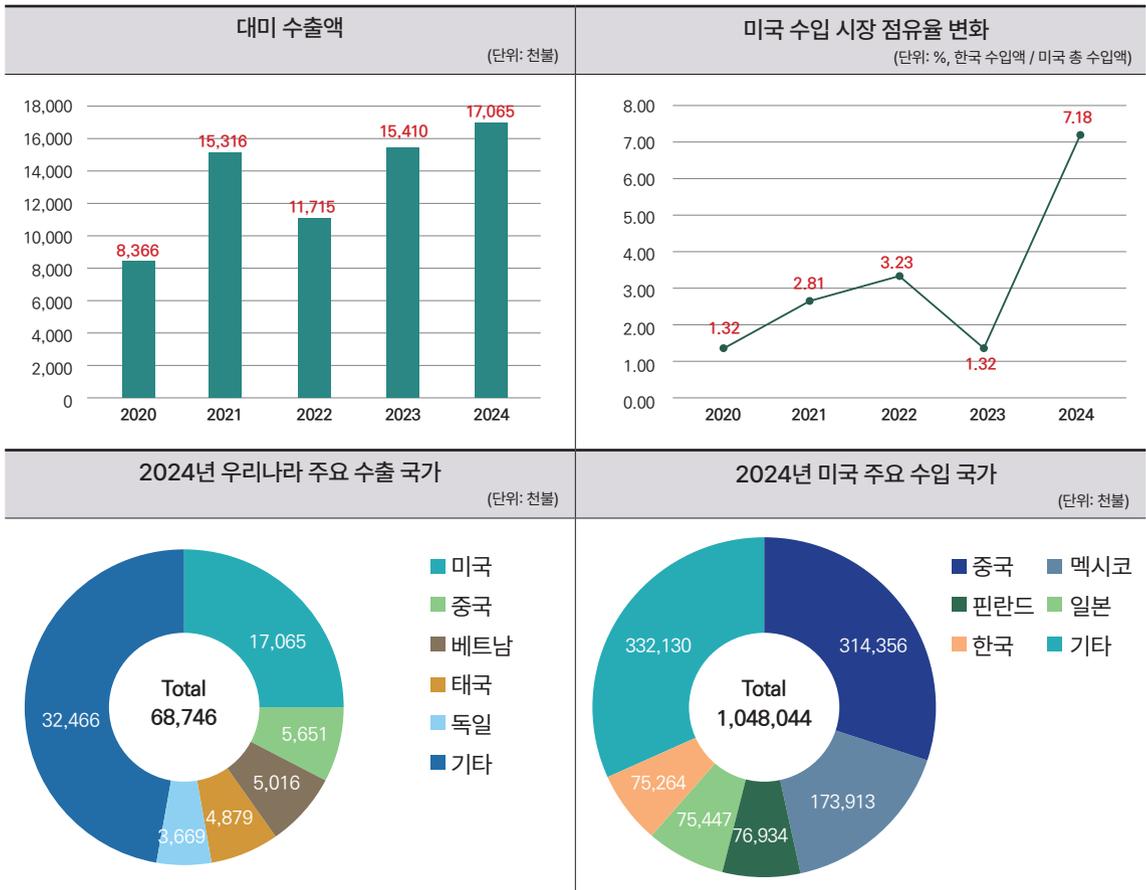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3005.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시장정보

제3005.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160 (2025.10.21.)

**사실관계**

요청자	Winner Medical (대리인: Liang + Mooney, PLLC)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두리 부착형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우레탄 필름</li> <li>• 초흡수성 섬유(SAF) 층</li> <li>• 부직포 층</li> <li>• 폴리우레탄 폼</li> <li>• 실리콘 메쉬 층</li> <li>• 이형 필름</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처를 덮고 습윤 치유 환경 제공</li> </ul>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5.10.5000</li> </ul>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에서 폴리우레탄 필름,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이형 필름 제조
2. 중국 또는 독일에서 실리콘 메쉬 제조
3. 6개 층 모두 베트남으로 운송 후 최종 조립
  - (1)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층을 풀고 열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 제작
  - (2) TPU, 드레싱 코어, 실리콘 메쉬 층, PE 이형 필름을 풀고 라미네이팅
  - (3) 규격에 맞는 길이와 폭으로 절단
  - (4)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및 소매용 라벨과 함께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 중국산 또는 독일산 원자재는 베트남에서 결합될 때 테두리가 있는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해당 제조공정을 수행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베트남임

## Ⅲ 시사점

- 다중 소재로 이루어진 폼 드레싱의 경우, 각 층의 소재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생산될지라도 이를 라미네이팅 하여 결합하는 등의 제조공정이 단일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16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16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